

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서

본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(이하 “본 변경계약서”)은 2024년 [12]월 [16]일 주식회사 이베데스다대한제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“갑”)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(이하 “을”) 사이에 아래와 같이 체결되었다.

전 문

가. “갑”과 “을”은 “갑”이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-182번지 일원에서 공동주택 및 복리·부대시설을 개발 및 임대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 10월 14일 자산관리위탁계약(이하 “기존 자산관리위탁계약”)을 체결하였다.

나. “갑”과 “을”은 기존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제1조 (기존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변경)

① “갑”과 “을”은 기존 자산관리위탁계약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아래와 같이 삭제하기로 한다.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위탁업무의 범위 및 내용) “을”은 “갑”이 위탁하는 자산운용업무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범위 및 내용의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행하기로 한다. 단, “갑”이 주택임대관리계약에 따라 주택임대관리회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아래 제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.</p> <p>1. 자산(이하 생략)</p>	<p>제3조(위탁업무의 범위 및 내용) “을”은 “갑”이 위탁하는 자산운용업무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범위 및 내용의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행하기로 한다. (단서 삭제)</p> <p>1. 자산(이하 생략)</p>

- ② “갑”과 “을”은 기존 자산관리위탁계약 제7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삭제하기로 한다.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7조(독립된 업무담당자 등)</p> <p>② “갑”은 주택임대관리회사를 선정하여, 본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, 임차인 관리, 기타 주택임대관리계약 상 정한 업무를 주택임대관리회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, “을”은 주택임대관리회사에 대한 관리·감독 의무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고유한 과실이 없는 한, 주택임대관리회사의 업무수행상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</p>	<p>제7조(독립된 업무담당자 등)</p> <p>② (삭제)</p>

제2조 (본 변경계약의 효력)

- ① 본 변경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.
- ② 기존 자산관리위탁계약 중 본 변경계약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은 본 변경계약의 체결로써 효력을 상실한다.
- ③ 기존 자산관리위탁계약 중 본 변경계약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제외하고는, 기존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나머지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며 당사자들을 구속한다.

(다음 면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위하여 이하 여백)

<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서>

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변경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변경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24년 [12]월 [16]일

“갑”

주식회사 이베데스다대한제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(삼성동, 아셈타워)
대표이사 권 용 하 (인)



“을”

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
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26층, 33층(삼성동, 아셈타워)
대표이사 박 중 철 (인)

